

## 임실군의회 입법예고 공고 2025-48호

임실군의회 김왕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「임실군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임실군의회 회의규칙」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5년 9월 16일

임실군의회 의장인



### 1. 제정이유

임실군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(안 제1조 ~ 제2조)

나. 군수의 책무에 관한 규정(안 제3조)

다.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,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등에 관한 규정(안 제4조 ~ 제5조)

라. 재정지원, 협력체계 구축, 심의 등에 관한 규정(안 제6조~제8조)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·법인 또는 기관·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제출기한: 2025년 9월 21일까지

나. 제출방법: 서면·우편·전자우편·직접방문

1) 주 소: (55927)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, 임실군의회(의회사무과)

2) 전 화: 063-640-2883, 팩스 063-640-2699

3) 전자우편: [charity81@korea.kr](mailto:charity81@korea.kr)

### 4. 제정안: 붙임

## 임실군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임실군 야간관광을 활성화하여 지역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야간관광”이란 일몰 이후 시간대에 관광명소, 축제, 편의시설(주차장 · 화장실 · 조명시설 등) 및 디지털 콘텐츠(미디어파사드, AR · VR, 메타버스, 인공지능 기반 관광서비스 등)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관광활동을 말한다.
2. “야간관광 활성화 사업”이란 야간 관광객을 위해 숙박, 음식, 오락, 휴양, 디지털 관광서비스, 편의시설을 제공하거나, 야간관광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을 개발 · 운영하여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역할) 군수는 야간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할 수 있다.

제4조(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)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
1. 야간관광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
2. 기반시설의 조성 및 개선
3. 콘텐츠 및 프로그램의 개발
4. 홍보 및 마케팅 전략

5.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무장애 환경 조성

6. 재원 조달 및 성과평가 방안

7.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

8. 환경 및 안전관리 방안

9.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, 관련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

제5조(야간관광 활성화 사업)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

1. 야간관광 기반시설의 조성 및 정비

2. 콘텐츠 및 프로그램의 개발

3.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개최

4. 관련 산업 종사자 및 전문인력의 육성·지원

5. 홍보 및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(온라인 플랫폼, SNS 활용 포함)

6. 조사·연구 및 정책 개발

7. 사업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

8. 환경 친화적이고 주민 안전을 고려한 야간관광 운영

9.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

제6조(재정지원)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,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경우, 그 방법 및 절차는 「임실군 지방

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
③ 군수는 재정지원 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필요 시 지원금 환수 등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④ 성과평가 기준 및 절차는 필요한 경우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.

제7조(협력체계 구축) ①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, 공공기관, 민간단체, 관광 관련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협력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, 위탁 대상의 선정 기준, 위탁 절차, 계약 조건, 평가 및 관리·감독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고, 그에 따라 위탁기관을 관리·감독할 수 있다.

④ 제3항의 시행규칙에는 위탁 기간, 자격 요건, 업무 수행 기준, 성과평가 기준,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다.

제8조(심의) ①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 시책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「임실군 축제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임실군 축제육성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 심의 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.

1.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·변경

2.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 방향 및 협력방안

3.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의 선정 및 지원 적정성
4. 성과평가 기준의 설정 및 주요 사업의 성과 검토
5. 콘텐츠, 프로그램, 행사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자문 및 평가
6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임실군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 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2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4. 작성자

- 임실군의회 김왕중 의원

## □ **관광진흥법**

제48조(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국제 관광의 촉진과 국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광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등에게 해외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, 관광 홍보물의 제작, 관광안내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, 관광사업자 또는 제54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관광지·관광단지의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지·관광단지·관광특구·관광시설 등 관광자원을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(屋外廣告物)을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.

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,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문화, 체육,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
2.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
3.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
4.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
5. 유희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
6.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